

인천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나5760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범

담당변호사 김민수, 박병주, 채희철

피고, 피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5. 14.

판결 선고 2020. 6. 11.

제 1 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4. 18. 선고 2018가소24505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2016. 11. 7. 피고에게 300,000원, 2016. 12. 26.부터 2018. 7.16.까지 보험료 명목으로 보험회사에 17회에 걸쳐 각 300,600원씩 지급하여 합계5,400,000원(원고는 보험회사에 지급된 금액 중 수수료 각 600원은 공제하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지급하였다.

- 1) 2016. 11. 7. 피고에게 300,000원
- 2) 2016. 12. 26. 보험회사에 300,600원
- 3) 2017. 3. 15. 보험회사에 300,600원
- 4) 2017. 3. 31. 보험회사에 300,600원
- 5) 2017. 4. 17. 보험회사에 300,600원
- 6) 2017. 5. 15. 보험회사에 300,600원
- 7) 2017. 6. 15. 보험회사에 300,600원
- 8) 2017. 8. 16. 보험회사에 300,600원
- 9) 2017. 9. 15. 보험회사에 300,600원
- 10) 2017. 10. 16. 보험회사에 300,600원
- 11) 2017. 11. 15. 보험회사에 300,600원
- 12) 2018. 1. 2. 보험회사에 300,600원
- 13) 2018. 1. 15. 보험회사에 300,600원
- 14) 2018. 2. 19. 보험회사에 300,600원
- 15) 2018. 3. 15. 보험회사에 300,600원

16) 2018. 4. 16. 보험회사에 300,600원

17) 2018. 6. 15. 보험회사에 300,600원

18) 2018. 7. 16. 보험회사에 300,600원

나.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 C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2017. 7. 13.부터 2018. 5. 15.까지 11회에 걸쳐 1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2017. 7. 13. 1,000,000원

2) 2017. 8. 21. 1,000,000원

3) 2017. 9. 13. 1,000,000원

4) 2017. 10. 13. 1,000,000원

5) 2017. 11. 13. 1,000,000원

6) 2017. 12. 13. 1,000,000원

7) 2018. 1. 15. 1,000,000원

8) 2018. 2. 13. 1,000,000원

9) 2018. 3. 13. 1,000,000원

10) 2018. 4. 13. 1,000,000원

11) 2018. 5. 15. 1,000,000원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1. 7.부터 2018. 7. 16.까지 18회에 걸쳐 피고의 딸 D의 보험료 총 5,400,000원을 대납하고, 2017. 7. 13.부터 2018. 5. 15.까지 11회에 걸쳐 C 명의 계좌로 총 11,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에게 합계 16,4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이하 '이 사건 원고의 대여 주장'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2017. 10. 9.부터 교제하면서 2017. 7.부터 2018. 8.까지 부천 E에 있는 원고의 집(이하 '이 사건 거주지'라고 한다)에서 동거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의 보험을 가입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보험료로 지급하여 준 돈 및 동거생활을 하면서 매월 생활비로 1,000,000원씩 지급한 돈이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사실확인서) 및 증인 F의 증언의 신빙성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2019. 3. 25.자 준비서면에서 원고가 피고를 만나 2017. 7.부터 2018. 8.까지 동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월 생활비라고 주장하는 금액은 원고가 위에서 인정한 동거기간 중인 2017. 7.부터 2018. 5.까지 지급되었다

그런데 증인 F는 이 사건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동거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주로 주말에 이 사건 거주지 외의 곳에서 만났다고 증언하여 원고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다.

증인 F가 작성한 갑 제2호증의 사실확인서에는 증인 F가 원고와 피고의 동거기간에도 이 사건 거주지에서 증인 F가 8개월 가량 함께 동거하였다고 기재하여 위 증언과도 일치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와 증인 F 사이의 친분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가사, 그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위 각 증거는 증인 F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원고의 대여 주장을 단순히 전해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갑 제2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임정택, 판사 김종민, 판사 윤재남